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해명자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<b>2019. 1. 26(토) / 총1매(본문1)</b>	
<b>담당 부서</b>	부동산평가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한정희, 사무관 김세묵 ·☎ (044) 201-3425
<b>보도일시</b>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입니다.

지난 1월 23일 개최되었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간에 이견 없이 원만하게 심의되었으며, 출처가 불확실한 일부 전언만으로 이루어진 기사내용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
\* “현실화율? 처음 듣는 통계인데 근거가 뭔가요?” 등의 발언을 한 위원은 없음

○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으며, 국민들에게도 이에 대해 잘 설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○ 위원회의 중론은 현재 공시가격은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과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.

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관련 법률\*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으로 과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입니다.

\* (「부동산공시법」 제1조)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·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**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**하겠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조선일보 1.25(토).)>

◆ 공시위조차 근거가 뭐냐...학계에서도 위헌·위법 소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묵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